

「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제 안 설 명 서

□ 의안번호 제1997호

「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 
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2019년 12월 9일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개정으로  
택시미터 수리검정 수수료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 
정한 것을 시·도지사 등 검정기관이 정한 금액으로  
변경됨에 따라
-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 
하는 사항입니다.

-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 
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  
-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2020. 11. 23.

서울특별시 재무국장 이 병 한